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68호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5- 1714호 세외수입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2
- 공고 제2015- 1722호 [능골지구 소3-4호선,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
계획 열람공고 공시송달 공고 3
- 공고 제2015- 1727호 행정대집행 비용 미납에 따른 재산(자동차)압류 통보 4
- 공고 제2015- 1729호 공시송달공고[장기미반환 건설기계 공매(2차)] 5
- 공고 제2015- 1733호 지방세 관련 개인정부 제3자 제공사항 공고 6
- 공고 제2015- 1741호 도로지정(변경)공고 7
- 공고 제2015- 1742호 남동구 강제전인 장기미반환 차량공매 공고(2015-2차) 8
- 의 회 사 무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고 제2015- 36호 조례안 14
- 의 회 사 무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고 제2015- 37호 조례(안) 입법예고 21
- 남 동 구 보 건 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제2015- 79호 예정 공고 26
- 남 동 구 보 건 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제2015- 80호 공시송달 공고 27
- 남 동 구 보 건 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제2015- 81호 공시송달 공고 28
- 남 동 구 보 건 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제2015- 82호 공시송달 공고 30

고 시

- 고시 제2015- 163호 간석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변경인가 고시 31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171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채납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고기간 : 2015. 11. 9. ~ 2015. 11. 23.(14일간)

○공고방법 : 남동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시송달 내용

1. 제 목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2. 채납자	성 명	신안전자	주민등록번호	13411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규정을 위반함		
4. 처분내용		연체(채납)정보 제공		
5.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6. 기타사항		※ 귀하의 채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세팀 (032-453-292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17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능골지구 소3-4호선, 소3-5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토지·지장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능골지구 소3-4호선, 소3-5호선)
 - 명 칭 : 능골지구 소3-4호선,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29-11번지 일원
4. 보 상 시 기 : 2015. 11월 ~
5.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6.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수산동 529-11번지 외 36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7. 공시송달자

소유구분	성 명	소재지	대상토지 및 지장물소재지	사 유	비 고 (등기번호)
토지소유자	고*순	남동구 수산동	578-10	수취인불명	18996-8457-7345

8.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9. 열람기간 : 2015. 11. 10 - 2015. 11. 24. (14일간)
10. 기타사항 :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17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운연동 산88-3번지) 불법 사항에 대하여 2011년 6월 28일 실시한 행정대집행에 사용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제1항에 의거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및 공시송달하였으나, 행정대집행 비용이 미납되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하여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행정대집행 비용 미납에 따른 재산(자동차)압류 통보
2. 근거법규
 - 가.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 나.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제3항
3. 공시송달내용

체 납 자	주 소	압류금액(원)	비고
윤 * 택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	19,008,640	
※ 행정대집행 비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오니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귀하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 절차에 의거 압류 조치 할 예정입니다.			

4. 공고기간 : 2015. 11. 12 ~ 11. 26(15일간)
5. 게시장소 : 남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관 및 주소지 면사무소 게시관
6.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032-453-2975)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7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으로 견인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건설기계를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통지서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장기미반환 건설기계(덤프트럭) 공매(2차) 통지

2. 공고기간 : 2015. 11. 12. ~ 11. 27.(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으로 견인되어 반
환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건설기계를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통지
서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32-453-2711)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1	박*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루지2길 ** (월피동)	인천06마3725	이사	
2	기*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논현동)	인천06마3725	수취인불명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1733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5. 11. 13.
- 제공받은 자 : 아진전산(주)
- 제공목적 : 자동차세 11월 수시분 및 독촉장(2015년 9월분) 인쇄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5. 11. 13. ~ 2015. 11. 28. (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5년 1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1741호

도 로 지 정(변 경)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5. 11.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지정(변경)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15. 11. 13. ~ 2015. 12. 14.
4. 공고 내용

도로위치	지적 면적 (㎡)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
				성 명	
도림동 535번지	9,725	4	5	윤 * *	본인 동의
	○ 변경내용 - 남동구 공고 제2015-534호로 지정한 도로의 면적이 8㎡에서 5㎡로 변경됨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1742호

남동구 강제전인 장기미반환 차량 공매공고(2차)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5년 11월 13일 ~ 11월 30일 24:00까지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15년 11월 30일 24:00 까지

다. 입찰결과 발표일시 : 2015년 12월 1일 14:00 이후

오토마트 인터넷공매홈페이지(www.automart.co.kr) [결과조회]에서 발표

2. 매각대상 차량 : 차량 7대 (따로붙임 목록 참조)

3. 공매입찰 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www.automart.co.kr) 입찰 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나. 선택한 차량에 대하여 입찰금액 10/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하
셔야 입찰에 참여되며, 기한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 (유찰된 입찰보증금은 계좌이체로 이자 없이 3일 이내 환불 처리함)

☎ 입금계좌번호 : 신한 100-024-706920 예금주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다. 입찰신청 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금액을 등록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함

마. LPG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취득이 가능하므로 입찰시 반드시 취득 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하며(만약 공동명의로 등록시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1인에 1대만 등록 가능한 기존 장애인(국가유공자) LPG차량은 처분해야만 등록 가능.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함), 자동차 인도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매각예정가 :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이번 회차 공매 최저가격임

(※1회 유찰 차량으로 당초 매각가격의 10% 감액된 금액)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입찰권한이 있는(입금완료) 자로서 1인 입찰(단독입찰)시에도 낙찰 됨.

7. 매수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찰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등으로 충당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 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 동일하며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8.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중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대금(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로부터 15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10.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 가. 공매물건에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열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 나.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입찰전에 차량보관소를 방문하고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라. 견인차량보관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2-47 남동구견인차량보관소
(☎ 032-453-2903~4)
- 마. 낙찰되고 계약체결후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고 인수해간 차량은 어떤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바.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 ※ 매각차량중 번호판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교통행정과(☎032-453-2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대상차량내역(2015-2차)

연 번	체납자인적사항			체납금액	차량번호	차명	제조사	연식	차량평가액	공매입고일	채권관계기관
	체납자	주민(법인) 번호	체납 건수								
1	청호중기(주)	110111- *****	9	519,300	80어6563	카니발6밴	기아	2001	630,000	2015.03.09	은평구 세무2과
											은평구청 차량등록과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시흥시청 클린도시과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인천서구청 교통행정과
											서울 성동구 교통지도과
											서울 시청 교통지도과
											성남시 중원구 경제교통과
											서울 시청 교통지도과
											서울 서대문구 교통관리과
											서울서부경찰서
											종로구청 세무2과
											서울 종로구 주차관리과
2	이*호	720627- *****	6	390,240	25조9647	SM5	르노삼성	1998	630,000	2015.03.09	경기도 시흥시 교통정책과
											시흥시 환경정책과
											광주광역시 서구 세무2과
											남동구청교통행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징수부
											광주광산경찰서
											광산구청 세무2과
											광주광역시 북구 세무2과
											광주북부경찰서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건설교통과
											인천남동구청 교통행정과
											광주광역시북구교통과
											제천시 교통과
											광주광역시 북구청 세무과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자격징수부
											대우캐피탈주식회사

3	최*일	561211- *****	2	115,200	13우4440	레간자	대우	1997	450,000	2015.03.09	남동구청교통행정과
											남동구청자동차관리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교통과
											용인시 차량등록과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
											용인동부경찰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건설도시과
											용인시 차량등록과
											용인시 기흥구청 세무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건설교통과
											중원구청장 경제교통과
4	정*영	580916- *****	3	160,900	73노3157	스타렉스	현대	1998	900,000	2014.07.22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전주시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남동구청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남동구청세무1과(인천31무2070)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징수부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 징수부
											남동구청 세무과
											서울영등포구청 세무관리과
											인천지방법원(2005카단15807)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남동구 사회경제국 환경위생과
5	김*일	640625- *****	4	197,120	39저6813	스타렉스	현대	2001	900,000	2015.01.12	인천지방법원(2005카단12539)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인천남동구청세무1과
											남동구 사회경제국 환경위생과
											신한카드(주)
											남동구청교통행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 징수부
											부평구청 환경보건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영업심사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2과
											충청남도 당진군 교통
											신한카드(주)

6	CHANBU**** EKARIN	751005- *****	1	45,840	인천31다7648	누비라웨곤	대우	1998	450,000	2015.01.1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과
7	(주)플라워로	134511- *****	1	45,840	69노9332	카렌스베타	기아	2000	450,000	2015.02.17	용인동부경찰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용인시 차량등록과
											청주시상당구청건설교통과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세무과
											공주경찰서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5-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 최근 핵가족화, 고령화, 배우자 사별, 이혼가구의 급증으로 홀로사는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제3조)
-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 제6조)
-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월)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453-5013, 5030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선옥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63
----------	------

발의연월일 : 2015. 11. 6 .

발 의 자 : 이선옥 의원

찬 성 자 : 한정희 의원 외 5인

□ 제안이유

- 최근 핵가족화, 고령화, 배우자 사별, 이혼가구의 급증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보장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제3조)
-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 제6조)
-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조
-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구 관내 홀로사는 노인에게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
2.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7조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소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이선옥 의원 (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5-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 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효율적인 생활체육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생활체육활동 증진과 민간주도의 생활체육활동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체육 회원단체의 경비 지원시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 (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동 의원발의)

의안 번호	1764
----------	------

발의년월일 : 2015. 11 . 9 .

발 의 자 : 박 인 동 의 원

찬 성 자 : 서 점 원 의원 외 6 명

☐ 제안이유

- 효율적인 생활체육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생활체육활동 증진과 민간주도의 생활체육활동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생활체육 회원단체의 경비 지원시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
(안 제4조 제5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⑤ 구청장은 생활체육 회원단체인 종목별 연합회 등을 비롯해 관계되는 단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생략)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설>	⑤ 구청장은 생활체육 회원단체인 <u>종목별 연합회 등을 비롯해 관계되는 단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한다.</u>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개정 조문 없음

작성자 : 박 인 동 의원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79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 공고기간 : 2015.11.09.~2015.11.22.(14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11.23.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 고 (말소예정일)
기타식품 판매업	52	뉴오거리마트	김*식	경인로 649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08.26.	2015.11.23.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11 22.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처분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3

2015년 1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80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 고 기 간 : 2015. 11. 09. ~ 2015. 11. 23. (15일간)
4.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반 음식점	2000-0199735	불쌈닭	최*호	남동대로898번길 86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	2013.12.31.	2015.10.27.
	2012-0199306	이찌마	이*호	문화서로28번길 7-19 (구월동)		2014.02.03.	
	2010-0199686	마마로 피자	김*문	매소홀로 1108 (서창동)		2014.05.29.	
	2011-0199859	브로콜리 너마저	이*훈	문화서로28번길 16 (구월동)		2012.06.30.	
	2012-0199494	김가네 닭이야기	김*표	문화서로4번길 19-1 (구월동)		2014.06.30.	2015.10.22.

5.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5년 1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81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 고 기 간 : 2015. 11. 09. ~ 2015. 11. 23. (15일간)
4.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자
일반 음식점	2009-0199641	술이네포차	김*자	만수서로11번길 19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05-08	2015.10.23.
	2010-0199951	쭈꾸쭈꾸미	김*정	앵고개로934번길 51 (논현동)		2014-01-09	
	2013-0200033	미스터만두	문*승	장승남로 36 (만수동)		2014-03-23	
	2012-0199778	얼큰한매운탕	백*일	남촌동로 21 (남촌동)		2013-03-20	
	2009-0199958	술통	유*필	논현동 2블록 4로트		2010-12-31	2015.10.28.
	2011-0199614	별꼴탕수육	이*희	만수로 31 (만수동)		2014-12-31	
	2009-199501	만리성	강*정	남촌로93번길39 (남촌동)		2013-08-01	
	2002-199999	쫄기쫄기 (만수3호점)	김*집	구월로378 (만수동)		2014-09-16	
	1997-199257	도담골추어탕	정*이	논현동224번지		2009-06-17	
	2007-199208	주원참오리 참숯불구이	정*아	앵고개로941번길39-17 (논현동)		2013-12-31	

5.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5년 1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82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 고 기 간 : 2015. 11. 12. ~ 2015. 11. 26. (15일간)
4.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반 음식점	2009-0199129	통큰돈가스	황*	남동대로889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	2012.10.02.	2015.10.27.
	1994-0199275	금빛호프	이*숙	주안로241번길 1 (간석동)		2010.12.31.	
	2013-0199799	시골집	양*홍	예술로 198 (구월동)		2014.03.05.	
	2008-0199051	홍춘	김*영	구월남로 198 (구월동)		2014.12.31.	

5.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5. 11.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163호

간석동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변경인가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196(2004.11.15.)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44(2011.10.04.)호 및 제2012-241(2012.09.24.)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151(2015.10.14)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간석동 616-6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 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간석동 616-6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 나. 면 적 : 24,356.2㎡(사용대지:23,085.7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일원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 상가동 5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2년 6월 1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가. 토지 및 건축물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범양아파트 및 상가
 - 나. 지 목 : 대
 - 다. 면 적 : 24,356.2㎡
 - 라. 소 유 자 : 범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아파트 및 상가 각 호수 소유자)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기 정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간석동 616-6	23,084.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99%	283.85%	79.2m

○ 변 경

위 치	대지면적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간석동 616-6	23,085.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95%	284.97%	78.55m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 정

가. 아파트(지하 2층, 지상 19~27층, 7개동, 6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전용면적	세대수	비 고
59㎡(A)	4	재건축 소형주택 30세대[임대 및 전세주택]
59㎡(B)	4	
59㎡(C)	4	
59㎡(D)	12	
59㎡(E)	6	
59㎡(A)	18	분양 (631세대)
59㎡(B)	17	
59㎡(C)	14	
59㎡(D)	70	
59㎡(E)	39	
76㎡(A)	96	
76㎡(B)	88	
84㎡(A)	150	
84㎡(B)	139	
계	661	661

○ 변 경

가. 아파트(지하 2층, 지상19~26층, 9개동, 6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전용면적	세대수	비 고
59㎡(A)	161	재건축 소형주택 9세대[임대 및 전세주택]
59㎡(B)	42	
74㎡(A)	142	분양(634세대)
84㎡(A)	40	
84㎡(B)	193	
84㎡(C)	65	
계	643	643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

○ 기 정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에 무상양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	도 로	1,087.4	범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 조성(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	공 원	-		
	대 지 (현황도로)	-	주차장	184.1		
	합 계	-	합 계	1,271.5		

○ 변 경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에 무상양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	도 로	1,086.8	범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 조성(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	공 원	-		
	대 지 (현황도로)	-	주차장	183.7		
	합 계	-	합 계	1,270.5		

10.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나. 건축법 제2장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다.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라.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11. 기타 관계도서 : 생략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92.)에 비치】